

건 축 법 시 행 규 칙 일 부 개 정 령 안

2021.

국 토 교 통 부
(건 축 정 책 과)

법 제 처 심 사 전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 이유

지난 6월 광주 재개발사업 철거공사 중 발생한 건축물 붕괴사고 원인의 하나로 불법하도급이 지목됨에 따라, 민간 건축공사 현장에서도 불법하도급을 차단할 수 있도록 감리자의 업무에 하도급 적정성 검토의무를 명시하는 한편,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가 설계 및 공사감리 계약 시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하는 보험(공제)증서를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시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도 제출토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사감리업무에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검토·확인’ 추가(안 제19조의2제1항제3호 신설)

나. 착공신고 서류에 보험(공제)증서 추가(안 제14조제1항제4호 신설)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건축사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가입증서
제19조의2제1항 중 제3호부터 제9호까지를 제4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
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하도급자의 자격에 대한 적정성 검토·확인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착공신고등) ①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건축공사의 착공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 호서식의 착공신고서(전자문서 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 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 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1. ~ 3. (생략) <u><신설></u>	제14조(착공신고등) ①----- -----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건축사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가입증 서
제19조의2(공사감리업무 등) ①공 사감리자는 영 제19조제7항제3 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2. (생략) <u><신설></u> 3.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의 지도 4. 공정표의 검토 5. 상세시공도면의 검토·확인	제19조의2(공사감리업무 등) ①-- ----- ----- ----- ----- 1. ~ 2. (현행과 같음) 3. 하도급자의 자격에 대한 적 정성 검토·확인 4. ----- -- 5. ----- 6. -----

<u>6.</u>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의 적 정여부의 검토 · 확인	<u>7.</u> ----- -----
<u>7.</u> 품질시험의 실시여부 및 시 험성과의 검토 · 확인	<u>8.</u> ----- -----
<u>8.</u> 설계변경의 적정여부의 검토 · 확인	<u>9.</u> ----- -----
<u>9.</u> 기타 공사감리계약으로 정하 는 사항	<u>10.</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4082